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7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6월 23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정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약칭 및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’의 용어 정의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로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회회장이 위촉하는 사람’으로 명확히 정의함(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 삭제).
- 일부 조항의 체계자구와 약칭 사용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○ 기타사항 : 해당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 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 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3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” 을 “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로 한다.

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”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</u>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제4조(구성) ① <u>의정모니터는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<u>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</u></p> <p>2.~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구성) ① &lt;삭 제&gt;</p> <p>① <u>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,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(이하 “의정모니터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 의정활동을 점검하고,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역할)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의회 및 서울특별시회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
2.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
3.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·건의
4.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
5.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

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,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 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위촉 해제)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
2. 다른 시·도 등으로 진출하였을 때
3. 타인의 의견 도용 등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
4.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활동지원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비보상 등)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